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6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조승래·양정숙·이성만

장철민 • 윤건영 • 전혜숙

김회재 · 이정문 · 강선우

김민기 • 변재일 • 이규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우체국예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 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이 사회적 책 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ĕ	행	개 정 안
제18조(예금자금의	순용) ①・②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
		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